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의결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덕 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기관명 변경 및 기능개편, 부설기관 및 지원(支援) 설치 근거 구체화, 상임이사의 선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제18336호)으로 개정('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2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등, 별표)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개정

다.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 (안 제2조제1항)

1)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법, 타 공공기관 사례 등에 따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변경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일 변경 (안 제5조제1항)

1)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을 위해 해당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인력개발원에”를 “인재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원은 매년 10월 31일”을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인력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력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 4월 30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② ---------- 인재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력개발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인재원----------.
⑤ 인력개발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재원----------.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력개발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인재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인재원에 ----------.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6조(결산서의 제출) ---------- 인재원----------

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력개발원 감사의 의견서	4. 인재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력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 인재원----------.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재원----------.
② 인력개발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재원----------.
부 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년 1월 28일----------.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100만원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200만원
3.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닌 자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4.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닌 자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	법 제23조 제1항	100만원
2. ----------		200만원
3.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400만원
4.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2302